

1998. 11. 12

제81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증 개정 조례 안

사회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전영희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본 조례개정안은 1998년 9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998년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항(의미 상실)을 삭제하고
-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의 문제점을 개선(제23조제1항제2호)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“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” 정의 삭제 (제2조제7호)
- “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” 삭제 (제8조제5항)
- 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종류 및 재질” 삭제 (제10조제1항 중 단서조항)
- “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” 삭제 (별표 3 부과항목 2호란)
- “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” 규정 개정 (제23조제1항제2호)

■ 참고사항

-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: 제468호('98. 1. 12)
-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: 제468호 - 제2조제7호, 제5조제1호, 제8조제2항
-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안 :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청소 67510-237

■ 검토의견

-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1998년 8월 14일 제정됨에 따라
- 1997년 9월 26일 조례 459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신설된 제2조제7호(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)는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제7호와 중복된 규정이며,
- 또한 동조례 제8조제5항(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)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4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고,
- 동 조례 제10조제1항(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종류 및 재질) 중 단서조항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제8조에 수정하여 규정되었습니다.
- 또한 별표 3, 부과항목 2호 라항은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별표 부과항목별 과태료 기준 제1호 “가”항 및 “다”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 이러한 관련 조례간의 중복된 내용들은 집행의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번의 조례개정안은 중복성 배제를 위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- 특히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“별지 제12호 서식”의 신고서에 수수료 상당액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사무서에 신고한 후 “별지 제13호 서식”의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(스티커)를 교부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음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.

○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와의 중복성 배제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배출 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